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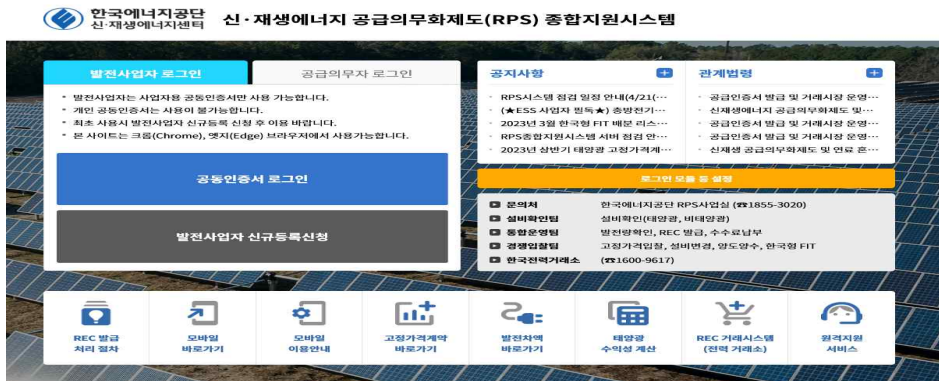
계통연계비 FAQ 및 유의사항

Q. 발전량 확인 및 작성란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 2022년에 금액을 정산받은 달부터 현재까지 발전량을 확인하여 작성하고 발전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이메일고지서 등)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발전량 확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시스템(rps.energy.or.kr)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계량한 공식발전량 또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 문의전화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콜센터 1855-3020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국번없이 123



Q. 반드시 경기도민이어야 하나요?

- 공고문상의 내용과 같이 대표자가 경기도민이어야 하며 발전소도 경기도 소재여야 합니다.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의 주소로 확인)

Q. 작년엔 경기도민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시민입니다. 안되나요?

- 안됩니다. 공고일(4월 24일)을 기준으로 경기도민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사업개시신고수리 공문 등은 어디서 받나요?

-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서류 발급은 발전소 준공시 업체에게 문의하면 확인가능)

Q.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언제 기준이며 둘 다 내야 하나요?

- 모두 공고일(4월 24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뽑아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개인,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입니다.

Q. 한명(혹은 한 개 법인)명의로 100kW이하 발전소가 여러 개인데 지원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각 발전소 합산하여 신청인(혹은 법인)당 최대 100kW 지원가능합니다.

Q. 용량이 사업개시 공문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확인증이 다른데 무엇이 기준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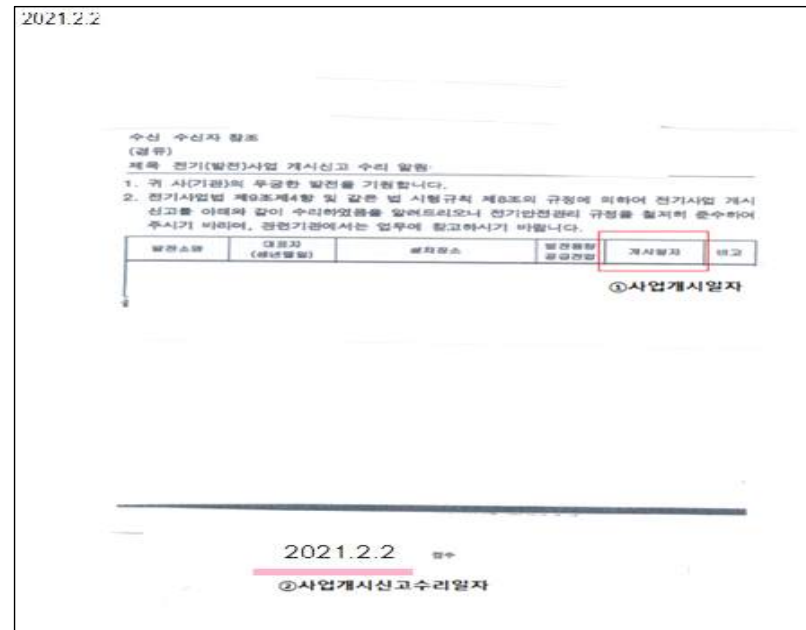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확인증이 기준입니다.

Q. kW당 지원단가는 언제알수있나요?

- 이의 신청기간 이후 확인 가능하며, 지원단가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 신청자격인 '2022년'에 사업개시신고를 수리의 기준은?

- > 시·군에서 발급받은 사업개시신고 수리 공문의 **결재 날짜(㉔)** 기준입니다. 사업개시일자(㉑)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시·군에서 발급한 공문의 하단의 결재일(혹은 시행일)기준으로 **2022년**이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

1. 신청서 접수 시 동일 건의 중복신청에 주의하여 주시고,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제출서류 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FAQ(자주 묻는 질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3. 한 사업자에 2개 이상의 발전소가 있을시 발전소 별로 각각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신청서는 도장날인하며, 법인은 법인 도장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지급 신청서 작성 방법

경기도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대표 (서명)

***협동조합 등 단체의 경우에만 하단 기재**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 (수집목적) 사업수행(계획수립, 집행, 만족도 조사 등) 및 성과 분석 등에 활용
- (이용방법) 지원사업의 대상자(기준) 적합 여부 확인 / 향후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정책 개발의 통계, 연구 등에 활용 / 사업 홍보자료 및 신청인 의견수렴 등

수집항목	○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납세증명서, 보조금 입금용 계좌 ○ (사업장) 소재지, 용량(kW), 발전소 상호, 사업개시신고 수리 계통연계 공사비, 사업자등록번호, 발전사업허가증, 발전량 조사내역표, 발전량 확인을 위한 고지서 또는 데이터, E-mail 고지서, 기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
사용목적	○ 지원기준 적합·중복 참여 여부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연구·통계자료에 활용 ○ 발전소 운영현황 수집 및 사업홍보에 활용 (발전소 사진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경기도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발전현황 등 관련 데이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자(상호명) **법인명+대표명** (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